

석면비산측정 결과표

1. 작업장 개요

측정의뢰자 (석면해체·제거업자)	현장명(공사명·작업명)	
	두호주공1차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 중 석면해체제거작업(3차)	
	현장 소재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두호로 66 두호주공아파트 1차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번호	업자명(상호)
포항-20170129 (3차)	(주)삼오공영개발	
전화번호	대표자	
031-457-2703	박래식	

2. 측정기간 - 2017년 04월 17일(1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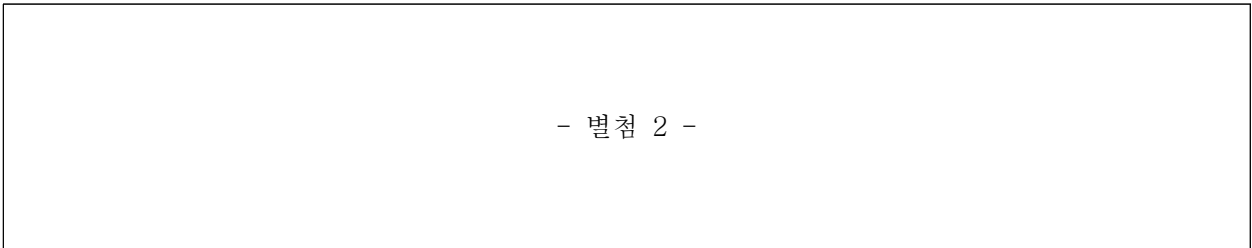
3. 측정자(분석자 포함)

성명	자격종목 및 등급	자격등록번호	비고
위진형	대기환경기사	04202072176X	측정자
최인준	대기환경기사	06201074059W	분석자

4. 측정결과

측정위치	측정시간(분)	유량(ℓ/min)	측정농도($\text{개}/\text{cm}^3$)	초과여부
- 별첨 1 -				

5. 측정 위치도(측정 장소)



2017 년 04월 17일

주식회사 메트로리사이클링



(주)삼오공영개발 귀하

-별첨1 -

04월 17일

시료번호	측정위치	측정시간(min)	유량(l/min)	측정농도 (개/cm ³)	초과 여부
A-1	11동 음압기1	40	10.2	검출한계미만	미만
A-2	11동 음압기2	40	10.1	검출한계미만	미만

LOD : 7 f/mm³

석면배출허용기준 : 0.01 f/cc

분석방법 :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ES 02303.1) 위상차현미경법, NIOSH7400 Method 위상차현미경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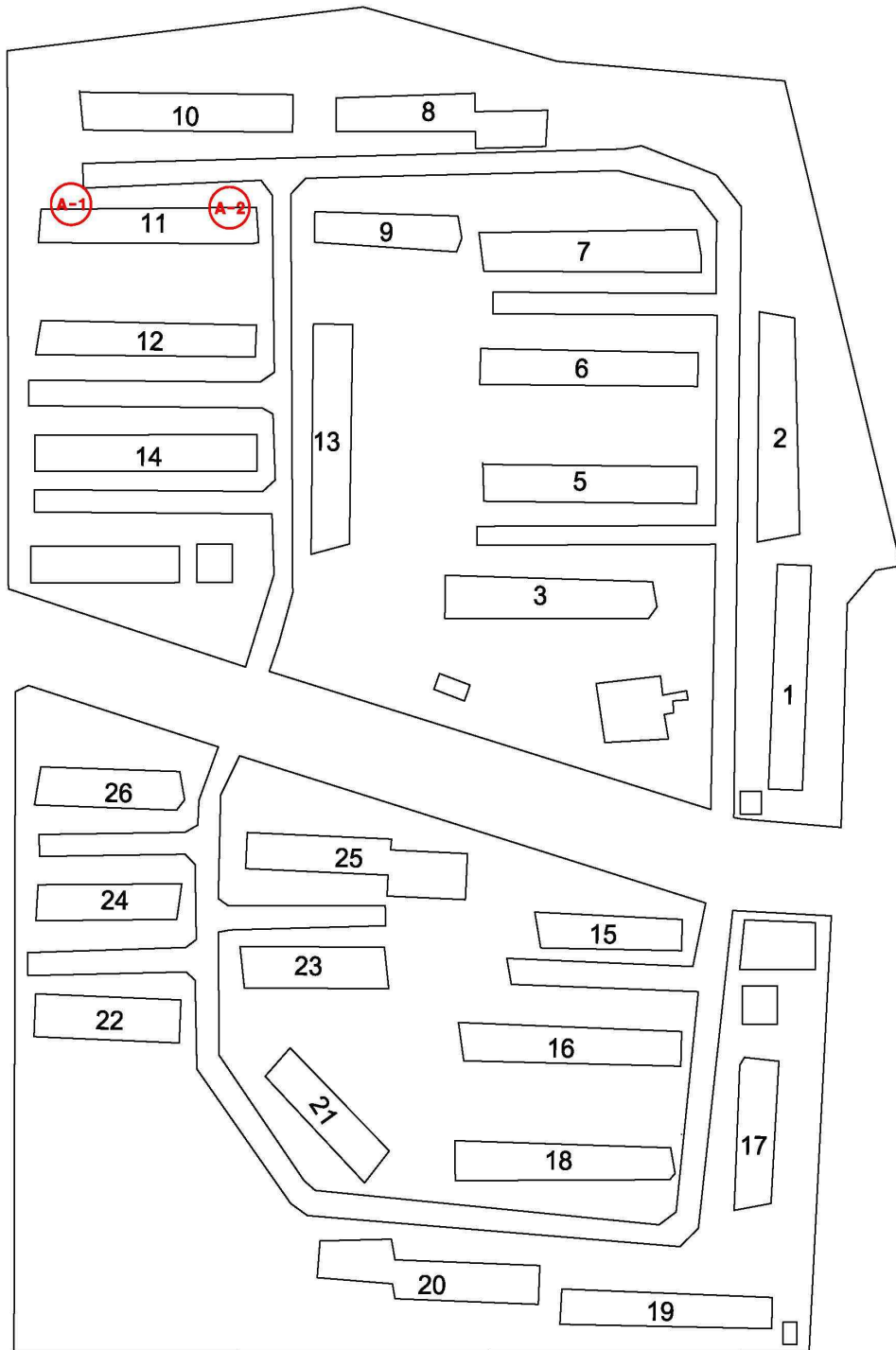
본 보고서는 법적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본사의 허가 없이 복사, 재발행 될 수 없음.

별도 통보가 없는한 시료는 7일 이내 폐기됨.

※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 2항에 따른 석면비산농도 측정은 매일 실시하여야 하는데, 계속적인 비로인해 측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건물 외부의 석면비산 농도 측정은 하지 않음. (단, 음압기 제외)

04월 17일

두호주공 1차아파트 단지도



측정 사진
04월 17일



A-1

11동 음압기1



A-2

11동 음압기2

제2013-120002호

석면조사기관 지정서(변경)

기관명	주식회사메트로리사이클링	
소재지	(140-748) 서울특별시 용산구 새창로 70 (도원동, 도원동삼성래미안 아파트상가 4층) 408호	
대표자성명	이영태	
지정사항	총 대행(지정) 한계	사업장(0)개소, 근로자(0)명
	관할 지역 대행(지정) 한계	사업장(0)개소, 근로자(0)명
	대행(지정) 지역	전국

※ 준수사항

1. 석면조사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고용노동지방관서장의 자료제출요구 및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석면조사기관은 지정받은 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 규정의 의하여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합니다.

2013. 6. 26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장

